

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대책

농림부

1.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

가. 해외 발생동향

-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말과 금년 초에 걸쳐 대만·일본·중국 등 아시아 11개국 및 미국·캐나다에서 동시에 발생
- 최근 중국(7. 6), 태국(7. 5), 베트남(6. 29) 및 인도네시아(6. 16)에서 재발하고, 8월에는 남아공과 말레이시아에서 신규발생(총 15개국)
- 베트남, 태국 등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되어 인명피해 발생
- 인체감염 : 베트남 27명(사망 20), 태국 12(사망 8), 캐나다 2(사망없음)

나. 국내 방역상황

- 작년 12. 10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후 2004. 3. 20 경기 양주를 마지막으로 10개

시·군(7개 시·도)에서 총 19건 발생

- 경남 양산지역 이동제한 해제(2004. 5. 29)를 마지막으로 모든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
- 발생농장(19농가) 및 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농장(12농가) 분변검사 및 입식시험(21일간) 후 가축 재사육 허용
- 국내 종식상황 OIE 통보(2004. 9. 21)
 - ※ OIE 청정국 기준 :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(2004. 3. 21)후 6개월 경과
 - ※ 일본은 우리나라산 가금육 수입중단조치를 해제(2004. 10. 13)
- 역학조사 결과 철새, 불법휴대축산물, 해외여행객 등 바이러스 유입요인중 철새를 통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
- 주 발생지역(음성·천안)이 철새도래지와 인접, 철새 분변검사 결과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
 - ※ 일본에서도 철새를 유력한 유입원으로 결론

- 유전자 분석결과(미국 CDC) 일본 바이러스와는 유사한 반면, 태국·베트남 바이러스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
- 원발농장은 충북 음성군의 육용종계장이 아닌 충남 천안의 종오리농장(2003. 10말~11초 유입추정)으로 오리농장(부화장)을 매개로 여타 오리 및 양계농장으로 전파

주요 방역추진 상황

- 모든 발생지역에 위험지역(3km) 및 경계지역(3~10km)을 설정, 이동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 시행
- 392농가 닭·오리 등 5,285천수 살처분·매몰
- 발생농장 반경 500m내외 접촉가능성이 있는 돼지 등 모든 가축을 신속히 살처분하여 변종바이러스 출현가능성을 사전에 모두 차단
 - ※ 돼지(5농가 9,410두), 개(12농가 283두), 염소(1농가 8두) 등
- 축산농가, 관련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,531억원 지원
 - 10. 15 현재 1,410억원(92%) 배정, 1,066억원(70%) 집행
-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산 가금류 및 닭·오리고기 등 생산물 수입금지, 발생국 운항노

선에 대한 검역·검색 강화

-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가금육(7,476톤) 반송 또는 폐기
 - 미국 4,093(98%), 태국 3,165(99%), 중국 120(100%) 등 총 7,378톤(99%) 완료
- 확산방지를 위한 혈청검사, 예찰 등 강화
- 전국 오리농장, 역학관련농장 혈청검사(962농장 17,623건) 실시
-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4개지역 총 5,460점 검사(전부 음성)
- 닭·오리농장에 대한 일일예찰, 소독 및 분뇨 방역관리 강화
 - ※ 기타 가금사육농장 및 닭·오리도축장 등 종사자 예방접종 권장 홍보

2. 평가 및 문제점

종합평가

- 발생초기 초동방역·연론대처는 다소 미흡하였으나 예찰강화로 의심농가 색출, 신속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조기에 진정
- 일본은 우리나라를 벤치마킹, WHO는 방역 우수국가로 평가(1. 29)
- 가금질병 방역의 어려움과 인수공통전염병의 중요성 인식



<잘된 점>

- 발생농장과 역학관련농장 예방살처분, 발생 지역 및 전국의 가금 사육농가 매일 전화예찰·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로 확산 차단
- 전문가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'가축방역협의회'의 적기운영 및 토론을 통한 방역 대책 보완·추진
- 발생사실의 신속한 발표와 OIE 등 국제기구 보고로 대국민 및 국가 신뢰 제고, 정책의 투명성 유지

<미흡한 점>

- 태국·베트남에서는 공식발표 이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적기에 검역·검색활동 미흡
- 역학조사에 일부 농가의 비협조, 분뇨처리 시설과 노계전문 처리업체 통제관리, 사람 등 이동통제 소홀로 추가 발생
- 언론에서 살처분 혐오장면과 베트남 사람사망 등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, 소비가 급감하였으나 위험지역 닭·오리 전두수 살처분,

철저한 도축검사, 방역종사자 비감염사실 홍보 등 대처 미흡

3.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대책

종합평가

- 아시아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방역 추진 보건복지부, 관세청 등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
- 강화하여 추가발생 억제 및 인체 감염 차단 협조

가. 국경검역 강화

- 태국·중국 등 발생지역산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검역강화
- 수입상대국 발생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매 수입건별로 컨테이너 전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(박스·포장지 등 바이러스검사)
 -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(7. 20), 수입자제 및 검역협조 요청



- 태국 방역실태 현지조사(7. 26~8. 1) 및 가축방역협의회 개최(8. 21)
 - 현지조사결과 및 가축방역협의회 회의결과 등 계육업계 설명(9. 1)
 - 태국산 열처리 가금육 작업장별 생산능력을 파악하여 그 범위내에서 수입되도록 조치
-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조건을 충족하는 미국·일본에 대하여는 가금·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해제 추진(9. 15 입안예고)
 - 인천공항·만, 평택항 등에 검역관 증원배치(56 → 81명) 및 농림부 또는 검역원 본원에서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
- 검역탐지견 집중배치 : 중국·태국·베트남 등 아시아 발생국 중심
 -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강화
- 발생국 농장 및 가축시장 방문 자제, 애완조류나 닭고기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기내방송, 리후렛 배포 등 적극 홍보

나. 국내방역 강화

- 발생지역 특별관리 및 농장 예찰강화로 재발요인 사전제거
- 발생 및 취약지역(21개 시·군) 농장에 대한 1일 2회 예찰 실시 및 '전국 일제소독의 날' 소독 강화
- 오리농장·도축장 혈청검사(2만건, 9월~2005. 1월), 철새도래지(천수만 등 25개 지역) 분변검사(2,500점, 10월~2005. 1월) 추가 실시
- 고병원성 H5N1 백신개발기술 확보(저병원성 H5N3 바이러스 이용)
- 전국적인 확산 등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개발완료후 국내 백신제조업체(5개소)에



술전수 및 대량생산시스템 구축 추진

-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용 간이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
- 시·도 가축방역기관 5,280수분 공급 (2004 하반기 병성감정용)
 - 가축위생시험소 본·지소(44개소) 1개소 당 120수분 기준
- 방역관련부처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
- WHO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위험성 경고에 따른 국무총리실 주관 대책 수립
-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(질병관리본부 주관) 월 1회 이상 개최 공동대응
-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에서 국가 위기관리대상 질병에 포함 관리
-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·운영(11월~익년 2월)
- 시·도 및 시·군별 '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본부' 설치 가동

- 농가별 임상관찰 실시상황을 전화 확인 (시·군 주관)
 - 집중관리대상지역(21개소) : 3일간격 전 농가 실시
 - 기타지역 : 시·도 자체계획 수립 실시 (최소 7일 간격 실시)
- ※ 집중관리대상 : 발생 시·군(10) 및 경기(안성·평택·포천·고양·김포·용인·화성), 충북(청원), 충남(연기), 전남(영암·함평)
- ※ 지역축협, 방역본부, 양계·계육·오리 협회 시·군지부 등과 농가를 분담
- 시·도지사는 집중관리대상 시·군의 전화 예찰 결과를 주간단위로 취합하여 토요일 17:00까지 농림부에 보고(보고서식 '별첨')
 - 단, 의심환축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 조치

4. 협조요청사항

- ① 닭·오리농장 예찰활동 강화
- 농가에서 1일 1회 이상(집중관리지역은 2회 이상) 임상관찰 실시토록 계도

- ② 관내 닭·오리농가 사육현황 파악·비치 및 가상연습(시·군)
- 발생시 신속한 방역지역 설정 및 누락농가 없도록 파악 철저
- 시·군별 발생대비 취약지역 위주 방역지역 설정, 이동통제초소 및 매몰지 위치선정 등 가상시나리오 작성

**③ 농장·도축장·부화
장 등 출입자 및
차량 통제·소
독 철저**

- 닭·오리도축
장 자체검사원
은 가축운반차량
하차전·하차시 임상
관찰 강화 및 차량·계류
장·도축시설 등 소독관리 철저
- 일회용 난좌 재사용 금지, 플라스틱 난좌는
반드시 소독후 재사용
- 운반차량(가축·사료·약품·분뇨·달걀
등)내 휴대용 분무기를 항상 휴대하고 농장
출입시 내부(운전석·조수석), 바퀴, 차체
를 소독
 - 농장출입시 1회용 방역복·덧신 착용후
출입, 농장 밖으로 나갈 때는 출입구에서
사용한 방역복 등을 벗고 소각
- 시장·군수는 닭·오리도축장, 축분(닭·
오리) 비료제조업체 소독실태 등 수시점검,
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철저

④ 야생조류 등 접촉 차단조치 철저

- 사육가금과 까치·철새 등 야생조류와의
접촉을 방지



- 축사·사료창
고·분뇨처리장
내 야생조류가 들
어오지 못하도록
문단속, 그물막
설치, 비닐 포장,
생석회 도포 등
차단조치

- 가금관련 농가의 철새도
래지 방문자제 및 부득이
출입시는 신발 세척·소
독 후 귀가토록 홍보

- 축산농가의 태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말
레이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
행자제 홍보

**⑤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및 집단 개사육 농가
특별관리 실시**

- 가열처리 급여여부,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
및 위생관리 수시점검
- 예찰·혈청검사 및 폐사축 병성감정 실시
등 강화
 - ※ 폐사가축을 개사료로 급여하는 농가, 남
은 음식물을 가열하지 않고 급여한 농가
는 고발조치C